
착한요양원 이용 안내서



착한요양원

기관명	착한요양원	설치일자	2023년 08월 01일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개정법)	입소정원	24명
대표자	박주선	협력병원	한사랑 패밀리 의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44 대명프로자 5층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1)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착한요양원시설 시설물 사용 상 주의사항

- 치료 / 의료기기는 책임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완강기 / 탈출구 등은 요양보호사 또는 관리자 등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CCTV는 철저하게 규제되어 담당자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는 배락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조리기기는 조리사의 허락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휠체어 사용시 어르신 발과 손 등이 다른 곳에 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 착한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께서(직원포함)는 착한요양원 시설의 파손, 분실,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이용 절차

병원진료 상황 발생시	▷ 보호자에게 연락 및 상황설명 후 조치 진행 ▷ 어르신께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
협력병원	▷ 한사랑 패밀리 의원

2)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구분	총계	시설장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의사 (계약)	간호사 (조무사)	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관리인
							1급	2급	유예					
현원 (명)	18명	1	2	0	1	0	11			0	2	1	0	0

● 주·야간 종사자

구분	주간			야간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설장	09:00~18:00		상근		
복지팀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팀 (간호조무사)					
조리원, 사무원	09:00 ~ 18:00		상근		
요양보호사	주간	09:00~18:00	상근	상근	
	A,B,C조로 운영 (풍당당)	주간	09:00~18:00		
		야간	18:00 익일 09:00		

● 평·휴일 종사자 인력

구분		평일	휴일
시설장		근무	
사회복지사(사무원)		근무	근무 ※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끼리 휴무 조정함.
간호(조무)사		근무	
조리원		근무	조리원끼리 휴무 조정함.
요양보호사	주간	근무	휴무 조정에 따라 근무
	A,B,C조로 운영 (풍당당)	평일, 휴일 상관없이 주,야간 1번으로 근무	

3)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시설급여
- 장기요양등급 1, 2, 3, 4, 5

※ 2025.01.01 ~ 12.31

구 분(1일수가)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본인 부담금	1등급 (90,45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 (83,910)	503,460	302,070	201,380
	3,4,5등급 (79,240)	475,440	285,260	190,170
비급여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351,000	351,000	351,000
합 계	1등급	893,700	676,620	568,080
	2등급	854,460	653,070	552,380
	3~5등급	826,440	636,260	541,170

※ 4,5등급은 3등급과 동일적용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사재료비	1끼 3,500원 (1일 3식/ 10,500원, 30일/ 315,000원)
간 식 비	30일* 1,200=36,000원
이.미용비	무료

5) 시설의 규모 및 현황

● 시설 현황

구 분	사무실	침 실	간호사 실	요양보 호사실	물리 작업실	프 로 그램실	식 당 조리실	화장실	세 면 목욕실	대 피 시 설
시설	○	○	○	○	○	○	○	○	○	○

● 시설규모

면적	471.49 m ²
----	-----------------------

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①	상품명	한화 복지시설배상 책임보험
	보장기간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첨부: 보험증권 별첨

7) 입소자 현황 [2025.02.10 기준]

구분	현원	남	여	등급별						입소대기	
정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남	여
24	242	0	24		2	14	5	3	0	-	24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 1

노인학대 예방

실버스마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29 또는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익년 3월 5일 목요일 2월 28일 금요일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증결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착한요양원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일표를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폭을 조르고 팔을 비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정신적 학대



질린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환이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 며 수시로 노치를 주었다.

성적 학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착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방임



할아버지의 참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안과응보라며 의식주 재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유기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얼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홈어 또는 금어금종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